



# 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 
개정안에 대한 **성별영향분석평가**

2012. 3. 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』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.

### 가.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

구분	자치법규명	담당부서	주요 개정내용	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
개정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행정 지원과	1. 제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○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(서대문구 관할 보훈관서장)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(안 제3조제3항제15호) ○ 자치법규 자율정비 통보사항 반영 -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는 사항을 조례에서 심의사항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조문 삭제 (안 제2조제4호) - “취약지역 대비책”은 시·도지사가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조문 삭제 (안 제12조) -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규정 개정 (안 제6조제1항) ○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기관명칭 등 수정 (안 제3조제3항제2호, 제5호, 제7호, 제12호, 제13호)	해당부서 의견 없음  <별첨>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

### 나.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

구분	자치법규명	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
개정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<b>■ 개선사항 없음</b>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대한 검토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령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

- 붙임 : 1.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1부.  
 2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안) 1부.  
 3. 검토의견 통보서 1부. 끝.

주무관 **고동희** 여성정책팀장 **나승임** 여성가족과장 **방동숙** 복지문화과장 03/29  
오제성

협조자

시행 여성가족과-13448 ( ) 접수 ( )

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/ http://www.sdm.go.kr  
 전화 1689 /전송 02-330-1624 / / 부분공개